

# 미국의 새로운 무기수출통제정책 소개

– Defense Trade Security Initiative –



李 東 夏

駐美 군수무관단장  
육군 대령

상당 부분의 방위교역을 미국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Extension of ITAR Exemption to Qualified Countries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ITAR면제 대상국이 되기 위해서는 수출통제, 산업보안, 정보체계, 사법체계 및 상호 호혜적인 방산시장접근 허용 등 선진국가와 같은 수준의 정책방향 및 제도를 요구하고 있는 바, 모든 것이 개방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의 방산능력을 전문화하여 특정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당당히 선진국가와 상호 교류 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여야 될 것이다.

린턴 美 대통령은 냉전 상황하에서 제정된 현재의 방위교역 통제제도 가 냉전 이후의 국제상황, 다국적 방산 회사들간의 인수 합병 등 방위교역 분야에서의 급속한 여건 변화에 따라 현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제도로 변경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지난 5월 22일 美 국무부의 방위교역통제구상(Defense Trade Security Initiative)으로 불리우는 17개의 개혁안을 승인하였다.

그 동안 미국은 연 평균 200억 달러의 방위교역을 허가해 왔으며, 이러한 허가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구상은 방산 시장에서의

효율성과 경쟁을 증진시키며 아울러 상호안전보장에 필요한 통제 장치를 유지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5대 주요 방위 교역국으로서 이번 개혁안으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승인된 개혁안은 4개 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새로운 수출승인제도의 수립

둘째. 기존 수출승인범위의 확대

셋째. 기존의 ITAR(국제무기교역규정) 면제 규정의 확대

넷째. 정부 대 정부 PROGRAM에 대한 기술이전의 증진

으로 요약 될 수 있다.

160km 떨어진 축구장 3~4개 크기의 지역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ATACMS 지상 전술 유도탄



### ● 새로운 수출 승인 제도

새로운 수출승인제도로는

- Major Program Authorization

- Major Project Authorization

- Global Project Authorization

- Tech Data Authorization for Acquisitions, Teaming, Mergers, Joint Ventures and Similar Arrangements가 있으며 각각의 개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Major Program Authorization

최근 수년간 현저한 국방예산의 감축, 전 세계적인 경쟁, 미국과 유럽 방위산업간의 teaming이 국가간의 공동개발, 공동생산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적시에 포괄적인 승인절차가 필요하게 되었다.

미국 업체가 OEM업체가 되는 美 정부가 승인한 사업으로 시작단계에서, 하드웨어, 기술자료, 용역 등을 포함하여 단일/포괄 수출 승인을 받는 제도로 승인유효기간은 8년까지이며(현재 장비 수출승인 시는 최대 4년) 주요 방위물자의 개발사업을 포함하는 주요 사업(major program)에 대하여 해당되고 이러한 승인은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며, 최초의 승인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이나 거래가 있을 경우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

NATO국가, 일본 및 호주가 대상국가이다.

#### \* Major Project Authorization

주요 방산물자의 상업판매에 대한 단일/포괄 수출승인제도로 미국의 단일 또는 다수의 주 계약 업체(prime contractor)는 판매와 관련된 하청업체(sub contractors)에 대한 정보, 자료공개(data release)범위, 용역, 장비(hardware)수출, 공동조립 및 공동생산 등 전 사업에 대한 수출허가범위를 결정한다.

미국정부와 주 계약업체간의 협의를 통하여 일단 수출 허가 범위가 정해지면 수출이 지속되는 동안 승인과정이 신속하게 처리되며, 그 유효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대상국가로는 NATO국가, 일본, 호주가 해당된다.

#### \* Global Project Authorization

공동협력사업을 위한 정부간의 국제협정 하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출에 대한 단일/포괄 승인제도로 美 국방부는 국제협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협력사업단계 및 활동에 적용할 표준거래조건을 작성할 예정이다.

일단 업체가 초기에 국제협정에 의한 사

업 참여 승인을 받게 되면, 아래의 상황 발생하기 전까지 수출을 위한 추가적인 승인을 면제받는다.

- 기본 거래조건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
- 의회에 통지해야 하는 조건에 들어가는 경우
- 새로운 최종사용자 및 참여자가 포함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승인된 국가들간의 수출 및 재수출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승인이 불필요하다.

(협력사업(cooperative projects) : 미국과 1개국 이상의 참여국들이 재래식 방위능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문서상의 협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방산물자의 연구, 개발, 시험, 평가,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

#### \* Technical Data Export for Acquisitions, Teaming, Arrangements, Mergers, joint Ventures and Similar Arrangement

미국의 유자격 방산업체가 NATO, 일본 또는 호주의 유자격 업체와 협력사업, 합작투자, 매수, 합병, 또는 이와 유사한 협력을 위하여 이들과 광범위한 기술자료를 교환할 수 있는 단일/포괄수출승인 제도이다.

수출마케팅을 위한 수출승인과는 달리 이승인제도는 미국업체와 유자격 외국업체간의 teaming arrangement, joint venture, merger, acquisition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arrangement에 필요한 훨씬 광범위한 기술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 ● 기존 수출 승인 범위 확대

기존 수출승인범위의 확대(Creation of New License Authorizations)로는

- Enhance the Use of Multiple Destination Licenses
- Enhance the Use of Overseas Warehousing Agreement
- Expedited License Review for NATO
- Special Embassy Licensing Program
- Interagency Export License Electronic Control Process

가 있으며,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nhance the Use of Multiple Destination Licenses



패트리어트 미사일

외국 방산업체들은 美 정부가 美 방산업체와의 공동생산품의 판매를 불허 할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美 방산업체와의 협력사업에 참여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美 정부는 현재의 ITAR규정에 美 원산제품에 대한 다수국가 판매 (multiple destination marketing)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허가제도는 거의 요청되지 않았었다.

美 방산업체가 NATO, 일본 또는 호주의 방산업체와 공동생산사업에 참여시, 美 정부는 공동생산품을 제3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가능국을 사전에 지정해 주는 제도로

사전에 합리적인 판매승인보장을 해 줌으로써 국가간의 협력 사업 참여를 증진시키는데 있다.

\*Enhance the Use of Overseas Ware-housing Agreement

이 제도는 미국의 업체가 단일협정체결로 부품과 같은 다양한 품목을 외국에 있는 자회사를 포함한 외국 업체(foreign ware-housing and distribution)에 수출할 수 있으며, 외국의 distributor는 사전 허가된 국가와 사용자에게 이러한 품목들을 재수출할 수 있도록 사전허가해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협정은 warehouse distributor에게 美 정부가 사전

승인 한 외국구매자가 급히 필요로 하는 방  
신물자(주로 수리부속)의 신속한 판매를 제  
공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우방국이 위기 상황하에서  
예상치 못한 수리부속의 소요가 발생시 이  
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으므로 미국의 대외  
정책목표 달성을 기여할 수 있다.

### \* Expedited License Review for NATO

미국과 NATO국들 간에는 미군과 NATO  
군사이의 전개능력과 기동력, 지소능력과 군  
수지원, 효과적 교전능력과 생존성, 지휘 및  
통제능력 면에서 격차가 있으며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의 신속한 수출  
승인이 요망된다.

美 국방부는 대상 품목 리스트를 작성하  
여 국무부와 해당 NATO국에 통보하고 신

주한 미군에 배치되어 있는 Apache 헬기

속한 검토를 위해 수출업자는 국무부에  
electronic application을 해야 한다.

### \* Special Embassy Licensing Program

NATO국가, 일본, 호주가 자국의 최종 사  
용목적으로 위성던 소재 자국 대사관을 경  
유한 수출 승인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신속  
한 수출승인검토제도로 수출승인은 반드시  
전자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10일 이내에 검  
토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 Interagency Export License Electronic Control Process

美 정부는 현재의 美 국무부, 국방부, 상무  
부 및 관련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출승  
인지원 컴퓨터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  
성을 인식하였으며, 향후 3년동안 300만 달  
러를 투입해 USXPORTS라 불리우게 될 시



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국무부와 국방부는 수출승인신청자료에 대한 적기 교류를 위한 국방부와 국무부의 방위교역통제실(DTC)간의 B to B 수준의 컴퓨터 운용 및 신청자의 E-document 제출을 의무화한다.

### • 기존 ITAR 면제 규정 확대

기존의 ITAR(무기교역규정) 면제 규정의 확대로는

- Extension of ITAR Exemption to Qualified Countries
- Defense Services Exemptions for Maintenance and Maintenance Training
- Exemption for DoD Bid Proposals
- Improving DoD's Use of ITAR Exemptions
- Streamlining COMSAT Components

Licensing이 있으며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Extension of ITAR Exemption to Qualified Countries

미국과 상응한 무기수출통제 및 기술보안 제도를 채택하고 또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를 입증하고 상호간 시장접근이 보장된 협정체결 국가에 대한 비밀이 아닌 방위물자 수출시, 협정체결 국가에 대한 ITAR 적용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방위물자 및 기술자료의 영구 및 임시 수출입을 허용하며 이러한 면제는 자격을 갖춘 외국회사가 미국회사와 자유롭게 비밀이 아닌 특정 기술자료를 교환함으로써 개발과정의 초기단계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게 될 것이다.

현재 영국과 호주가 우선 협상 대상국으

로 선정되었으나, 차후 미국의 제도와 관행 수준으로 향상된 우방국과는 이러한 면제제도를 확대 적용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도 선진국수준의 제도와 절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동시에 영국과 호주와의 협상진행을 예의 주시하며 이해득실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 \* Defense Services Exemptions for Maintenance and Maintenance Training

NATO국가, 일본 및 호주에 대한 정비지원과 훈련 향상을 위한 수출 건에 대하여 승인을 면제하는 제도로 미원천 방산물자에 대한 정비, 정비교육 및 정비관련 기술자료의 수출승인을 면제한다.

단 이를 위한 수리부속이 장비의 최초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제조설계의 기술이전을 포함하거나 정보 또는 know-how의 이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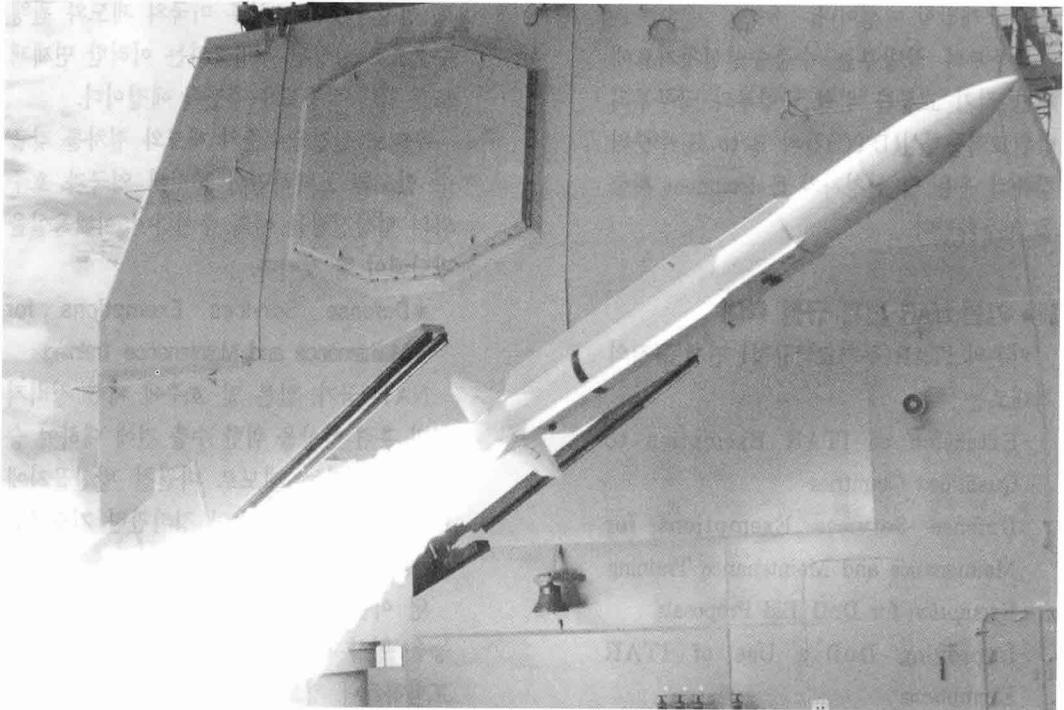
#### \* Exemption for DoD Bid Proposals

미국업체가 외국업체의 美 국방부 입찰에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한 기술자료 수출시 이의 승인을 면제하여 주는 제도로 외국업체가 정부 대 정부 사업의 RFQ/RFB에 참여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면제되는 기술자료의 범위로는 build-to-print, build 또는 design-to-specification 또는 기초연구에 제한되며, 설계방법, 공학적분석자료(engineering analysis) 또는 제조기술(manufacturing know-how)은 제외되고 있다.

#### \* Improving DoD's Use of ITAR Exemptions

이 구상은 美 국방부에 방위물자, 기술자료, 용역의 수출승인과 관련하여 상당부분의 면제승인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美 국방부의



이지스함 체계의 주축인 Standard 함대공 미사일

규정 범위 내에서 현재의 승인면제와 관련된 제한사항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美 국방부는 ITAR상에서 기존 면제권한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새로운 지침을 작성할 예정이다.

#### \* Streamlining COMSAT Components Licensing

이 구상은 미국안보와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하에서의 미국의 의무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한 상업목적 용 위성, 위성관련 기술, 구성품 및 systems의 수출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NATO 및 비NATO 주요 동맹국에 적용된다.

이 제도는 위성관련 구성품 및 기술자료의 대량수출승인(bulk licenses)을 허가하며 NATO 및 주요 비NATO 동맹국들에게 4년

간 복수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이 제도의 이점은 그 동안 요구되었던 세 부구매품목록 또는 계약서 또는 retransfer 및 최종사용자증명의 사전제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류들은 미국으로부터 선적 후 15일 이내에 ODTC에 제출하며 동시에 관련 美 회사는 선적관련정보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면 된다.

#### • 정부 대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 이전 증진

정부 대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이전의 증진으로는

- ITAR Exemption for FMS Defense Services
- Advance Retransfer Consent for USG

### Sold or Granted Items

- Periodic Review of the U.S. Munitions List 가 있으며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ITAR Exemption for Foreign Military Sales Defense Services

이 구상은 LOA 및 미국 업체와의 기본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승인된 경우 FMS하에서의 기술자료 및 용역의 이전시 이에 대한 수출 전에 대한 승인을 면제하는 것이다.

과거의 ITAR규정에는 FMS하에서 판매한 물자에 대한 용역수출의 승인면제를 해주지 않았었다. 따라서 물자를 판매한 미국회사는 구매국과 무상TAA(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s)계약을 맺고 별도의 수출승인절차를 밟아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구매국들은 이미 LOA상에 기술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로 무상 TAA 계약에 서명하는 것을 종종 거부해 옴에 따라 수출승인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이번 ITAR규정의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이다.

#### \*Advance Retransfer Consent for USG Sold or Granted Items

美 방위물자가 수출될 때마다 美 정부는 최종사용자증명을 요구하며, 이의 제3국으로의 재이전을 하고자 할 때는 美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제3국 정부로부터 최종사용자증명과 제3국으로의 이전금지를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승인시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불편함이 있어 왔다.

특히 위기상황하에서 우방국으로의 재이전의 경우 적기지원보장이 곤란하므로 사전에 미리 재이전 승인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美 원산방위물자의 재이전을 원하는 국가는 사전에 포괄적인 최종사용자증명 및 재이전보장에 대한 협정에 서명해야 하며 그 대상국가는 NATO국가, 호주 및 일본으로 한정하고 있다.

만약 미국의 우방국들이 이러한 포괄적인 협정에 서명한다면 美 국무부의 사전 승인에 따라 방위물자의 즉각적인 재이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 \*Periodic Review of the U.S. Munitions List

이 제도는 매년 U.S. Munitions List의 4분의 1을 검토 수정하는 것으로, 적절히 보호되고 통제되어야 할 미국의 주요 기술과 방위물을 목록화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기적으로 USML을 검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美 방산회사의 수출승인대상품목을 줄여 줄 수 있다.

상당 부분의 방위교역을 미국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Extension of ITAR Exemption to Qualified Countries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ITAR면제 대상국이 되기 위해서는 수출통제, 산업보안, 정보체계, 사법체계 및 상호 호혜적인 방산시장접근 허용 등 선진국가와 같은 수준의 정책방향 및 제도를 요구하고 있는 바, 모든 것이 개방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의 방산능력을 전문화하여 특정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당당히 선진국가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여야 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자료나 최근의 변경된 자료는 美 국무부 방위교역통제실의 web site인 [www.pmdtc.org](http://www.pmdtc.org)와 美 안보협력본부(DSCA) web site인 [dsca.osd.mil/](http://dsca.osd.mil/)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⑫